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주관기관의 권한·기능 강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02호, 2020.5.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의 환류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마련(안 제11조)

위원회는 중기지원전략안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함.
주관기관은 지침에 따라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별 이행계획 등을 포함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함.

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안 제12조)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등으로 함.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략회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다.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의 환류(안 제14조)

시행기관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등의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 위원회는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차기 종합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9. 29. ~ 11. 8.) 예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보건복지부장관
6. 국토교통부장관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8.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9.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② 위원회의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

가, 사무기구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실무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민간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 및 실무위원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를 각각 준용하며,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사무기구)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운영 및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정부는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연구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각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관기관은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분야별 기

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국회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개발협력 간 연계성 강화 및 정책의 일관성, 법 제14조에 따른 종합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 간 연계·부합성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해 중점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은 이를 토대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주관기관이 제2항의 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제1항의 중점추진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위원회 및 시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은 제1항의 중점추진방향 및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이 법 제4조에 따른 개발협력 간 연계성 및 정책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국회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수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관기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별 이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정세 변화 등 사정 변경시 중기지원전략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지원전략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경우, 그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2.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3.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②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략회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시행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주관기관은 전략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사무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관기관 소속으로 이미 구성·운영 중인 회의체의 경우 소관 분야의 개발협력전략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3조(협의체) 위원회 및 주관기관은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평가(이하 “국제개발협력평가”라 한다)는 경제

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시기·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국민과 관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행기관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등의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또는 보완 등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시행기관은 개선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개선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획 또는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등 수립 시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시행기관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은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환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점검(개발도상국 현지 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⑨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회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평가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소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평가정책 및 평가계획 수립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시행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계획 및 결과 심의
4.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정보 공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3.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실적(법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실적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 및 통계 관련 정보
- 제17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① 위원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세부 제출 항목, 제출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정보(발굴 단계에 있는 예비사업 및 평가 단계에 있는 종료사업의 정보를 포함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통계 관련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집한 연수사업 대상자 정보
 4. 그 밖에 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계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

여 시행기관, 민간 기관·단체 및 기업 등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 제출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해당 시행기관에 전달하고, 시행기관은 개선 필요사항 등의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때 위원회는 시행기관이 개선 필요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통계 보고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⑦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과 전자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점검 시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에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통보한다.

② 주관기관은 필요시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을 위원회,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전달하고, 시행기관의 개선 필요사항 이행 여부 등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의견을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 시행 과정 참여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현지 주재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외공관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기관은 외교·보안상의 이유, 사업절차상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은 주관기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 점검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 및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점검 계획을 마련한 후 해당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의견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재외공관 활동에 대해 시행기관의 의견을 매년 수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외공관의 역할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연 락 처	(044) 200 - 2159